

#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

[시행 2012.5.11.] [경기도조례 제4380호, 2012.5.11.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민법」 및 「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설립하고,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, 2011.3.15.>

**제2조(법인격)**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(이하 “가족여성연구원”이라 한다)은 재단법인으로 한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**제3조(사무소)** 가족여성연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**제4조(운영 등)** 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·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민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**제5조(사업)** 가족여성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1. 여성 및 가족정책개발 <개정 2005.2.21.>
2. 성(性)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3.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
4. 여성의 리더십 향상, 양성평등 및 인터넷 교육과정 운영
5. 도 내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연계망 구축 <개정 2008.7.25.>
6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 <개정 2008.7.25.>
7.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<개정 2005.2.21.>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, 2012.5.11.>

**제6조(재산 및 운영경비)** 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1. 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
3. 그 밖의 수입금 <개정 2008.7.25.>

**제7조(출연금 등의 지원)** ①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② 가족여성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·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**제8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)** 도지사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가족여성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·양여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

있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**제9조(공무원의 파견)** 도지사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가족여성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**제10조(행정지원 및 시행)** ① 도지사는 가족여성연구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행정지원을 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8.7.25., 2012.5.11.>

③ 도 산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가족여성연구원이 개발·보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**제11조(권한의 위탁)** 도지사는 가족여성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**제12조(보고 및 검사)**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여성연구원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, 2012.5.11.>

**제13조(운영규정)** 가족여성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>

**제14조(준용)** 가족여성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및 「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05.2.21., 2008.7.25., 2011.3.15.>

**제1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7.25., 2011.3.15.>

**부칙** <제4380호, 2012.5.11.>

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5.02.2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8.07.2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1.03.1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) <제4380호, 2012.05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